

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1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0. 19.

발 의 자 : 홍연아 의원 외 15인

□ 제안이유

-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·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 예방접종의 범위, 위탁계약체결, 수가산정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.
- 예방접종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최근의 전염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며, 영유아 1인의 만6세까지의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 병의원의 경우 45만원 정도 소요되어 이를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접근성, 지속적 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실하여, 본 조례를 통해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임
- 또한 안산시는 2007년 하반기 출생영아를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무상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출산 장려책이자 지방정부가 건강의 문제를 책임지려는 시도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.

□ 주요골자

- 가. 위탁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는 「전염병예방법」 제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장이 결정함.(안 제2조)
- 나. 위탁기관 선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.(안 제3조 제4조)

- 다. 예방접종 수가는 전염병예방법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르며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별도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가를 정할 수 있음.(안 제6조)
- 라. 예방접종 수가 및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7조)
- 마.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은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.(안 제8조)
- 바.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안산시의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야 함.(안 제9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

- 「전염병예방법」 제11조 및 제12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3,643,748천원(년간)

- 별첨 : 병의원 예방접종과 보건소 예방접종의 소요예산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
-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(8종 22회)
- 병의원 정기에방접종의 범위별 예산수반사항

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염병예방법」 제11조와 1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 대상 예방접종)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「전염병예방법」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(이하 ‘시장’ 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

제3조(수탁기관 선정) 시장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(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)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탁계약 체결) ①시장은 제2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,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 의료기관” 이라 한다)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제5조(업무감독) ①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,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예방접종수가) ① 「전염병예방법」 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.

②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별도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) ①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범위와 제6조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.

1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2. 관계공무원
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
4.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보건소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.

⑤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단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예방접종 비용의 지급)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체 재원의 조달)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안산시의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1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12. 12.

제안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수가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를 삭제하고, 예방접종의 범위를 DPT, 소아마비, B형 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,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를 DPT, 소아마비, B형 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,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하여 수정함. (안 제2조)
-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를 삭제함.(안 제7조)

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탁 대상 예방접종)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「전염병예방법」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DPT, 소아마비, B형 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,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9조 중 “책임하여야 한다”를 “책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제9조를 제8조로 한다.

